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병준]

목 차

1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3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4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21
5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7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42
8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9
9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7
10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4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08. 24.

나. 발 의 자 :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신중양,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3. 08. 24.

2. 제안이유

-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의 편익을 위하여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조례에 사용되는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해 정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비군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08. 08. ~ 08.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참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육군 39사단 거창 대대와 함양·산청 대대가 함양으로 통합됨에 따라 거창군 예비군대원이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차량운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예비군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 2023. 6. 14.] [대통령령 제33500호, 2023. 6. 7., 일부개정]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육성”이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지원과 산하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6. 11. 30.>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유지의 지원
 - 나. 사무실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 가. 사무·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 나. 사무실 집기·비품의 지원
 -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 가.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 나.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유지의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 시설의 지원
 - 가.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의 지원
 -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 2) 차량·선박의 확보와 인원·물자 수송의 지원
 -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물자 확보 및 유지
 - 나. 전투시설의 지원
 - 1) 진지구축 자재·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 2) 무기고·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08. 24.

나. 발 의 자 :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김향란,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3. 08. 24.

2. 제안이유

- 급격한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각종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녹색 성장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을 정함(안 제17조)

나.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을 정함(안 제18조)

다. 녹색교통 활성화, 차 없는 날 운영,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정함(안 제19조~제21조)

- 라. 탄소흡수원 등 확대,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을 정함(안 제22조·제23조)
- 마.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평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정함(안 제24조~제26조)
- 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2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08. 08. ~ 08. 14.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참고: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2022년 12월 28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군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

한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카.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제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마.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정부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마목에 따른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구매의무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철도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온실가스과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 버스·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구축
4. 자전거 이용 및 연안해운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현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현황에 대한 이행평가·점검 방안
3.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시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건강성 보호·보전을 위한 방안
4. 온실가스 흡수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홍보 등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과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사업자가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해양수산·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협정의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가 및 부문별·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잠정치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종합정보센터 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출의무 대상 정보·통계의 범위, 정보 및 통계의 개발·분석·검증·작성·관리, 각종 정보·통계의 공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2.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 개선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복원
5. 수질오염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0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08. 24.

2. 제안이유

-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계약」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위치	규모	위탁관리비	현 운영업체	비고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1,855㎡(3층, 철골) ▶ 용량 : 30톤/일 ▶ 방식 : 열분해가스화방식 	1,920	(공동수급) EMC 51% 화성 49%	관리인원 18명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 관리 등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 단, 거창군 소각시설(스토커형) 개선사업 완료 전까지
-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수탁자격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20톤/일 이상의 열분해 가스화방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수탁자의 적격성, 능력 등을 고려 선정위원회 평가

다. 소요예산 : 2,165백만원 정도 (2024년 소각시설 원가산정 용역 결과)

- 고정비 : 1,412백만원 - 변동비 : 753백만원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원가용역을 통하여 소요예산 산정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여 선정된 수탁자에게 거창군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 향후 추진일정

- 2023. 9. : 민간위탁 수행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3. 10.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구성
- 2023. 11.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23. 12. : 위·수탁협약 체결
- 2024. 1. : 위탁업무 개시

○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생활폐기물 소각 및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나. 관련조문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합계
군비	2,165	2,273	2,386	6,824

※ 매년 전문업체를 통하여 원가산정

3.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2,165백만원 확보 예정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여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코자 하는 것임.
- 「폐기물 관리법 제62조」 제3항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총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08. 24.

나. 발 의 자 :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신중양,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3. 08. 24.

2.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33340호, 2023. 3. 21.일부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령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08. 11. ~ 08. 16.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 품질 등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0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08. 24.

2. 제안이유

-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민간·공공분야 건설경기 동반 하락과 관내 및 도내 건설업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건설업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공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공사의 분리 발주 신설함(안 제3조의3)
-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함(안 제12조·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21.~8. 1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반영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경기 하락과 관내 및 도내 건설업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공사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지역 건설산업체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는 것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이 권장비율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본 조문이 신설되면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 참여가 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제3조의3(공사의 분리 발주)

분리발주 적합 공종의 정립과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비의 투명성 제고, 중소기업의 수주 증대, 공사대금

직접 지급 등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기대효과가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8. 10.]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일부개정]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경상남도의 시·군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실적 평가계획상 평가지표

세부 평가방법
○ 지역업체 참여 비율 명시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 평가방법 : 조례 반영 유무
○ 분할발주 근거 마련 - 평가방법 : 조례 반영 유무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0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08. 24.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정비함(안 제5조의3·제8조)
- 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을 명시함(안 별표 2)
-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7)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횡수별 차등 부과

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절차 개선함(안 제26조)

1)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조례 개선권고사항 반영

2)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생략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7조·제20조

2)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5조, 별표 5, 별표 8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6조제3항에서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수료를 면제코자 할 때에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 별표 2에 비고를 신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였음.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

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7에서 위반 횟수와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

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경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16. 1. 6.>
- 4. 삭제 <2016. 1. 6.>
-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21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위반행위

- 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 나.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면적 20㎡ 이상	·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4) 연면적 20㎡ 이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1) 연면적 3㎡ 미만
-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4) 연면적 10㎡ 이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 1) 연면적 5㎡ 미만
-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5) 연면적 50㎡ 이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연면적 50㎡ 초과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2) 교통안내소
-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 4)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장등이 인정한 편의시설물
-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1) 비행선
- 2) 그 밖의 교통수단
 - 가) 연면적 3㎡ 미만
 -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연면적 5㎡ 이상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연면적 5㎡ 초과 면적의 1㎡당 5만원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을 더한 금액 미만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별표 8] <개정 2021. 12.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사.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 2			
1) 입간판				
가) 연면적 3㎡ 이하		개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개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개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나) 연면적 3㎡ 초과		개당 80만원+ 연면적 3㎡	개당 105만원 + 연면적 3㎡	개당 135만원 +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 의 0.5㎡당 8 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초과하는 면적 의 0.5㎡당 10만원을 더 한 금액 이하	초과하는 면적 의 0.5㎡당 13만원을 더 한 금액 이하
2) 현수막				
가) 면적 10㎡ 이하		장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장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장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장당 80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 의 1㎡당 15 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05만원 +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 의 1㎡당 20 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35만원 +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 의 1㎡당 25 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1만3천 원 이상 8만 원 이하
4)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6천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이상 8만원 이하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 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 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 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2) 90일 이상 180 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0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08. 24.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한 안전점검능력(전문적인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사무: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영 제36조)
 - 벽면이용간판
 - 돌출간판
 - 지주이용간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간판
 - 옥상간판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위 광고물들의 게시시설
- 다. 위탁기간: 3년(2024. 3. 23. ~ 2027. 3. 22.)
-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마. 소요예산: 없음

4.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전문적인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춘 곳을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한 관리로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
- 나.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다. 그간 추진현황
- 2023. 8.: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 수립
- 라. 향후계획
- 2023. 9.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11. ~ 12. : 위탁기관 모집 공고(공개모집)
 - 2024.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24. 2. :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2024. 3. : 위탁지정서 교부 및 위탁 지정 고시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할 때 더욱 안전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 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0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08. 24.

2. 제안이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사무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나. 교육의 종류
 - 신규교육(연간 6시간)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
 - 보수교육(연간 3시간)
 - 옥외광고 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

○ 행정처분 대상자(3시간) :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 사업자
다. 교육비용 : 피교육자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가 납부

라. 위탁기간 : 3년(2024. 3. 23. ~ 2027. 3. 22.)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바. 소요예산 : 없음

※ 피교육생 1인당 자비 30,000원 부담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옥외광고업 사업자 등의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소양 함양
- 옥외광고업(물) 관련 개정 법규 및 변화되는 여건 등에 대한 교육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나.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제25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다. 그간 추진현황

- 2023. 8.: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 수립

라. 향후계획

- 2023. 9.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11. ~ 12. : 위탁기관 모집 공고(공개모집)

- 2024.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24. 2. :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2024. 3. : 위탁지정서 교부 및 위탁 지정 고시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법에서 정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 사업자 등의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0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08. 24.

2. 제안이유

-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건립한 거창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 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거창약초유통센터
 - 위치 : 거창읍 대평리 거함대로 3372
 - 시설현황 : 부지 3,444㎡, 시설 1,243㎡
 - 세부시설 : 판매장 118㎡, 집하장 및 창고 900㎡, 전처리시설 225㎡
- 나. 위탁사무

- 시설 유지관리 : 약초유통센터 토지·건물과 기계 장비 유지관리
 - 운영 관리 : 약초의 집하, 보관, 선별, 전처리, 소분, 저장, 판매 등
- 다. 그간 추진사항
- 2015년도 : 거함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016년도 :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준공, 공사 계약
 - 2017년도 : 거창약초유통센터 착공 및 준공
 - 2018. 7. :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 2018. 11.~12. : 입찰공고 3회 / 단독응모로 유찰
 - 2021. 1. 1. ~ 2023. 12. 31. :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 2023. 8. : 거창약초유통센터 재위탁 계획 수립

라. 운영계획

- 수탁자
 - 집하장 및 전처리장 : 거창군약초산업협동조합(대표:박성근)
 - 약초판매장 : 거창농특산물협동조합(대표:이장호)
- 위탁기간 : 2024. 1. ~ 2026. 12.(3년간)
- 위탁범위
 - 시설 유지관리 : 약초유통센터 토지·건물과 기계 장비 유지관리
 - 운영 관리 : 약초의 집하, 보관, 선별, 전처리, 소분, 저장, 판매 등
 - 집하장·전처리장과 판매장 분리 위탁

마. 소요예산 : 위탁금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제18조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나. 향후계획
- 2023. 9월 : 민간위탁운영 군의회 동의
 - 2023. 9월 : 재위탁 적정성 심의(민간위탁심의위원회)
 - 2023. 11월 : 협상 및 협약 체결, 고시
 - 2024. 1월 : 수탁자(단체) 위탁운영실시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약초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평가에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임.
-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고,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적 운영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 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10.01)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2014.10.01)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2014.10.01)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호신설 2014.10.01)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호이동 2014.10.01.)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약초센터의 위탁)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약초센터의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신설 2018.1.31.>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0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08. 24.

2. 제안이유

-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민간위탁 또한 재위탁하고자 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나. 사업비 : 7,000백만원
- 다. 주요사업
 - (H/W) 신활력 공유센터 조성/거창읍 대평리 1335-4번지 일원 (10,567m²)

○ (S/W) 신활력 아카데미, 월간거창농부, 주민창안 공모사업 등
 라. 사업기간 변경 : 경남도, 농식품부 협의 및 승인 추진

○ 당초 : 2020년 ~ 2023년 / 4년간

○ 변경 : 2020년 ~ 2024년 / 5년간 (1년 연장)

마. 민간위탁 재위탁

○ 당 초 : 2021. 5. 1. ~ 2023. 12. 31.

○ 재위탁 : 2024. 1. 1. ~ 2024. 12. 31.

바. 위탁현황

○ 위탁사업명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S/W사업)

○ 위탁기관명 : 활력거창네트워크

○ 위 탁 기 간 : 2021. 5. 1. ~ 2023. 12. 31.

○ 위탁사무 : 추진단 사무국 운영 및 S/W사업(21억원) 추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 고
신활력 아카데미	기초아카데미	신활력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	
	주민창안학교	(농업·농촌)창업 기초교육	
	푸른농부100	영농창업 청년 교육(이론 및 실습)	
	농촌관광 인력교육	체험지도사 등 역량강화 교육	
	공유부엌 매니저 양성	공유부엌 매니저로 육성	
월간거창농부		지역 농산물 등 소개판매	
주민창안 공모사업		주민 창안 사업 공모 및 선정·사업화	
특화가공상품 개발		지역 농산물 활용 상품화 추진	
거창 로컬푸드 육성		로컬푸드 생태계 구축 및 기반 확대	
공유부엌		건강한 식문화 형성 및 관련 콘텐츠 개발	
공유텃밭		공유텃밭 전문 활동가 양성	
홀리데이 거창여행		주민주도 관광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인력현황

직책	이름	소속	비고
추진단장	김제열	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사무국장	김경숙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원	조은겸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원	박희주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나. 민간위탁(갱신) 추진 계획 : 따로 붙임

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서: 따로 붙임

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사무 자체평가표 : 따로 붙임

마.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또한 1년 연장하고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자체평가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4년간 이루어졌던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재계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기간 연장과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입니다.

1 기본현황

□ 신활력플러스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년)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기반조성
- 주요사업
 - (H/W) 신활력 공유센터 조성/거창읍 대평리 1335-4번지 일원(10,567㎡)
 - (S/W) 신활력 아카데미, 월간거창농부, 로컬푸드 육성 등
- 운영방식
 - (H/W) 관(행복농촌과) 주도, 민간협력
 - (S/W) 민간위탁(수탁기관 : 활력거창네트워크 / 단장 : 김제열)
- ※ 위탁기간 : 2021. 5. 1. ~ 2023. 12. 31.
- 인력현황 : 상근직 3명(사무국장, 사무원2)
비상근 7명(추진단장, 코디네이터6)
- 사업비 : 7,000백만원(H/W:4,821 / S/W:2,179)
※ 부지매입비 별도 : 1,500백만원(군비), 매입완료(2020. 6.)

< 주요 추진경과 >

- 2019. 12. : 농식품부 신규공모 선정
- 2020. 5. ~ 2021. 2. : 농식품부 자문회의 실시 3회
- 2020. 7. ~ 2020.12 : S/W사업 민간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및 조례개정
- 2021. 05. : 추진단 사무국 설치 및 S/W민간위탁 시행
- 2021. 08. :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 2022. 09. : 추진위원 재구성 및 공동추진위원장 선발
(행정1, 의회1, 민간9)

2 신활력 플러스 사업 주요업무[소프트웨어 분야]

□ 신활력아카데미 등 8개 사업분야(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위탁)

○ 사업 종결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① 신활력 아카데미	선행. 기초아카데미	신활력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 주민 설명회	2020년 -5회 142명
	1. 주민창안학교	창업 기초교육 농업·농촌사업 아이디어 발굴	2021년(15명) 2022년(59명) 2023년(추진중)
	2. 푸른농부 100	영농창업 청년 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병행	2021년(5명) 2022년(5명) 2023년(20명 진행)
	3. 농촌관광 인력교육	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지도사, 마을해설사 등 역량강화 이론 및 실습교육	2021년(15명) 2022년(14명) 2023년(진행중)
	4. 공유부업 매니저 양성	공유부업 매니저로 육성 취약계층 영양지원 (기초, 심화, 창업시범 과정)	2021년(기초 32명) 2022년(기초 37명) 2022년(심화 26명) 2023년(진행중)
② 월간거창농부	지역 농산물 소개판매, 농촌문화, 로컬식문화체험, 농부마켓 운영	2023년 8회 계획 *3-7월 5회 기시행	
③ 주민창안 공모사업	주민 창안 사업 공모 및 선정·사업화 지원	2022년 4개소 완료 2023년 5개소진행중	
④ 특화가공상품 개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시제품개발 및 상품화 추진	대상자 모집 -모임결성 -활동지원/교육 (견학 및 워크숍)	
⑤ 거창 로컬푸드 육성	로컬푸드의 생태계 구축과 기반 확대 -로컬푸드 중요성 홍보 -로컬푸드 유통 가공 교육	심화교육 9회 견학 1회 소모임 3회 워크숍 및 현장실습 진행	
⑥ 공유부업	건강한 식문화 형성 및 관련 컨텐츠 개발사업	액션그룹 지원 어린이집, 학교 요리교실 운영	
⑦ 공유텃밭	공유텃밭 전문 활동가 양성, 소농들의 연결 -생태농사, 친환경, 소농교육	액션그룹 지원	
⑧ 홀리데이 거창여행	주민주도 관광프로그램 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지원	월천체험마을 등 5개 단체 진행	

3 사업기간 변경 주요내용

□ 사업기간 변경사항 : **경남도, 농식품부 협의·승인**

- 당초 : 2020년 ~ 2023년 / 4년간
- 변경 : 2020년 ~ 2024년 / 5년간 (1년 연장)

□ 사업기간 변경(연장) 사유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기간 등으로 인해 약 1여년간(2020년) 사업준비 기간 소요
- (H/W) 현재. 토지이용계획 : 일반공업지역, 유통업무설비 시설
⇒ 유통업무설비 시설 지구 내,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가공공장 설치불가
⇒ 유통업무설비 시설 변경(해제) 시, 일반공업지역 내 금회 계획된 「신활력 공유센터 조성」 가능
- ▶ 유통업무시설 변경(해제)은 지자체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로써, 도시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거창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 ⇒ **2023. 9.경**
- (S/W) 사업기간 내 팬데믹(코로나19)으로 대면 사업이 많은 사업 특성상 사업추진 애로
⇒ 총 사업비(2,179백만원) 중 당초 사업기간(2023. 12. 31.)까지 65% 집행(예상 집행잔액 : 779.4백만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연장과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기간 변경(연장) 추진계획

- 사업기간 연장
 - 8. 14. ~ 8. 22. : 추진위원회 동의(재위탁 포함)
 - 8. 21. ~ 9. 30. : 사업기간 연장 협의·승인 (경남도, 농식품부)
 - 10. 2. ~ 10. 6. : 시행계획 및 사업기간 연장 승인 고시

4 민간위탁 재위탁 주요내용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 : **군의회 동의**

- 당 초 : 2021. 5. 1. ~ 2023. 12. 31.
- 재위탁 : 2024. 1. 1. ~ 2024. 12. 31.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 및 재위탁 심의

○ 일 시

- 자체평가 : 2023. 8. 21. ~ 2023. 8. 22. / 2일간
- 심의평가 : 2023. 8. 22. ~ 2023. 8. 23. / 기간 중 1일

○ 평가자

- 자체평가 : 수탁기관 및 농촌진흥담당주사, 담당주무관
- 심의평가 : 민간위탁심의회(심의위원 6명)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안)

구 분	소속 및 직책	성 명	비 고
위 원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부위원장	행복농촌과장	곽철식	
위 원	사회적기업협의체 대표	김재순	
위 원	도시재생센터 팀장	오윤택	
위 원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김경화	
위 원	단노을생활문화센터 총무	윤진미	

○ 평가내용

- 대상기간 : 2021. 5. ~ 2023. 7.
- 평가항목 : 성과평가(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10개 분야)
위탁적정성(수탁기관 운영관리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

○ 평가방법 :

- 평가 관련자료 사전요청 후 자료 검토 및 자체평가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서면심의)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S/W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 8. 21. ~ 8. 22. :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자체평가
- 8. 22. ~ 8. 23.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 9. 04. ~ 9. 12. : 제272회 임시회 군의회 동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3.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약체결 등)

1.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내년도(2024년) 사업 추진방향

주요 추진방향

- 각 사업별 코디네이터를 통한 지원체계에서 발굴 조직된 **액션그룹의** 후속 성장지원 및 사업화 추진으로 향후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1)모두의 경제 업무협약을 통한 육성지원 사업 연계 추진

- ※ ¹⁾모두의 경제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내실화를 지원

□ 세부사업별 추진방향

- 추진단 운영
 - 추진단 활동비 소진으로 각 분과별 코디네이터 2023.12.31.까지 활동 종료
 - 2024년 추진단장 활동비만 잔여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
- 신활력 아카데미
 - 로컬푸드 소비자 인식개선, 로컬푸드 농가홍보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식생활 강사양성 과정 진행
 - 교육 수료생 공유부엌 운영 액션그룹 공모사업 연계
- 주민창안공모사업
 - 2024년 5회차 공고 모집
 -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화 추진 (모두의 경제 연계)
- 신활력 홍보
 - 청년 서포터즈 공개모집을 통한 신활력 홍보단 운영 지원
 - 청년 서포터즈 역량강화
- 특화가공상품 개발
 -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와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3인 이상의 주민공동체 대상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가공품 개발지원 공모사업 진행
-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 로컬푸드 실무자 교육 및 작부체계 조사 사업 추진
 - 시행계획상 푸드차량(운반·수집차량 사업) 구매는 추진단 및 행정 논의 결과 사업비 조정 예정
- 공유부엌

- 로컬푸드 소비자 인식개선, 농가홍보 및 식생활교육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식생활강사 액션그룹 공모사업 추진
- 액션그룹 후속 성장지원을 위한 전문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주말마을학교
 - 로컬관광 기획개발 운영 액션그룹 공모사업
 - 액션그룹 후속 성장지원을 위한 전문컨설팅 및 교육 지원
- 공유여행센터
 - 청년서포터즈 추가 공개 모집
 - 청년서포터즈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을 위한 전문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신활력 관광, 행사, 축제 기획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 테마농장100 들밥식당(월간거창농부)
 - 월별 테마 월간거창농부 진행
 - 청년서포터즈 관광프로그램 연계 추진

추진단 인건비 확보

- 추진단 인건비는 군예산으로 편성해 왔으며, 사업연장에 따른 내년도 (2024년) 추가 인건비(상근직 3명) 확보가 필요 [2023년 인건비 : 113백만원]
-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2024년) 본예산 편성